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75

발의연월일: 2020. 7. 22.

발 의 자:기동민·김원이·김영배

조오섭・정춘숙・박용진

황운하 · 양정숙 · 이정문

이상민 · 한준호 · 인재근

김회재 · 강훈식 · 도종환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연금법」은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급여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54조제2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

번호 제22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 전단 중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"을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서류의 제출요구권 등) ①	제54조(서류의 제출요구권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	2
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	
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	
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	
관, 지방자치단체, <u>그 밖에 대</u>	
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	보험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
<u>관</u> 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	요양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
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	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
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·가족	
관계등록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	
물·건강보험·장애인등록 등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	
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	
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	
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	
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